

2020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2020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3월 2일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I. 사업개요

1. 모집기간: 2020.3.2.~ 2020.9.29. (상시모집)

*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선정,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등 모집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업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 수산물, 비식품 지원 제외(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3. 지원대상 인증제도: GFSI 승인인증(FSSC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ISO22000, 할랄, 코셔, 해외유기인증, 미국 FDA 등록 등

* 인증기관의 국내·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품질 관련 국제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

**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필요 시 수출확대에 필요한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4.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비율

○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제품분석비
- 대행비: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 지원율: 인정소요비용의 70%

*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지원한도: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취득하는 경우 최대 40,000천원 지원

□ 지원기간: 2020.11.30.(월)

* '20년 인증취득 완료 건(인증서 발급일 기준)만 정산가능, '20년 이전 인증취득을 진행하여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 완료('20년 인증서 발급)한 경우 지원가능

** 인증취득 완료 후 가급적 2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5.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 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

○ 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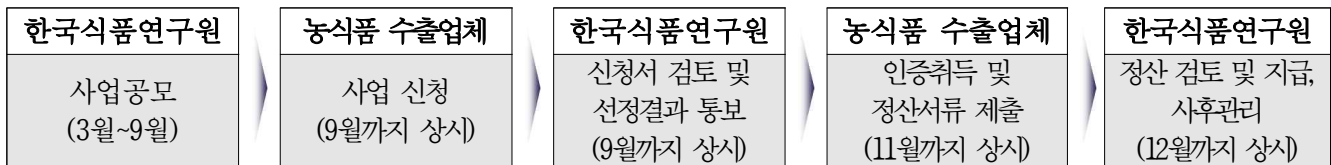
□ 선정평가 : 서류심사 결과 60점 이상

○ 계량평가(40점): 총매출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평가

○ 비계량평가(60점): 인증취득계획,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

* [별첨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참조

6. 추진절차



II. 세부사항

1. 신청자격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수출(예정)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타 정부기관 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지원신청서, 수출현황·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선정기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필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등 2019 매출액 증빙서류
- 2018/2019 수출실적증명원

3. 정산방법

- 정산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정산신청서, 정산세부내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정산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 정산기한: 쉐 구비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정산 필수 구비서류
 - 취득인증서 사본
 - 정산항목별 지출증빙서류(공통: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4. 기타유의사항

- 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 및 추가 불가하며, 신청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담당자와 유선확인 후 진행
 - * 10.31 이후 취소업체는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갱신/사후심사 신청 시 aT와 한식연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연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2021년부터 적용)
- 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온라인 작성)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 * 컨설팅기관이 등록에 미협조 하거나 등록/정산 시 전문가검토를 거쳐 수수료,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불가
- 지원금 부정수급 제안, 컨설팅비용 과다책정 등 컨설팅기관의 허위 제안
- 선정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요청 시 진행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온라인 입력)

5. 문의

- 신청 및 정산 접수문의: 한국식품연구원 이희나 기술기능원(063-219-9525, leehn08@kfri.re.kr)
- 해외인증 및 지원사업문의: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김유리 선임기술원(063-219-9383, yuri@kfri.re.kr),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 (<https://www.foodcerti.or.kr>)

[별첨 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2020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기준

1.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 신청 품목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	·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 인증제도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	
· 신청업체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갱신/사후심사 신청 시 지원연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적합)	-	

2. 계량평가(4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수출역량 (40점)	2019년 총 매출액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현황 및 계획서(온라인 작성) · 재무재표 등 2019 매출액 증빙서류 · 2018/2019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진흥원/ustradehub)
	2019년 총 수출실적 (금액기준)	10	
	수출증가율(%) (2019년 수출액-2018년 수출액)/2018년 수출액*100	10	

3. 비계량평가(6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인증취득계획 (30점)	· 해당품목 인증취득 필요성 및 타당성 · 인증취득 추진계획	30	· 수출현황 및 계획서(온라인 작성)
인증연계 수출계획 (30점)	· 제품 현황 · 수출 추진계획	30	

2020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기준

1. 정산개요

□ 정산신청금액

○ 정산비용 산출 (정산예시 참조)

- 인정소요비용 [정산 확정된 ‘인증비’ (a) + 정산확정된 ‘대행비’ (b)] x 70%=정산신청금액
- 정산확정된 ‘대행비’ (b)는 인정소요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정산

※ 정산예시

● 정산신청금액= 인정소요비용[6,300천원(a) + 5,600천원(b)] x 70% = 8,330천원

- 정산확정된 인증비(a) : 6,300천원 (심사비 5,000천원 + 항공료 800천원 + 분석비 500천원)
- 정산확정된 대행비(b):
 - 컨설팅비 4,000천원 한도 적용 : 5,600천원 (통역비 800천원 +컨설팅비 4,000천원 + 교육비 800천원)
 - 대행비는 인정소요비용의 50% 한도 적용 : (6,300천원 + 5,600천원) x 50% = 5,950천원
(대행비는 전체 소요비용의 50% 한도 내에 있으므로, 그 금액이 정산확정된 대행비가 됨)
- 정산신청금액: (정산확정된 인증비 6,300천원 + 정산확정된 대행비 5,600천원) x 70% = 8,330천원

[소요비용]

구 분	정산세부항목	소요비용(원)	인정소요비용(원)
인증비 (A)	심사비	5,000,000	정산확정된 인증비(a) 6,300,000원
	실사비(항공료)	800,000	
	제품분석비	500,000	
	소계	6,300,000	
대행비 (B)	통역비	800,000	정산확정된 대행비(b) 5,600,000원
	컨설팅비	5,000,000	
	교육비	800,000	
	소계	6,600,000	
합계		12,900,000	(6,300천원 + 5,600천원) x 70%= <u>8,330,000원</u>

□ 정산불가 사항

- 시설설치비, 물품구입비, 지원업체의 해외현지 방문비용, 식비, 유류비, 선물비, 타업체 방문을 위한 실사비, 렌터카 비용 등 인증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정산세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국내 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목
- 증빙자료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항목
- 정산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 정산 불가

2. 정산 세부항목 및 기준

구분	정산세부항목	기준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원의 인건비, 인증기관의 행정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심사비 및 등록비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실사비(항공료) * 해외에 소재한 인증기관 실사단의 국제선 항공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실사단(최대2인)의 국제선 왕복항공료(economy) - 항공권(e-ticket) 또는 여행사 거래명세서, 지출증빙사본 및 실사단 한국체류 세부일정 * 실사단이 다수 국내업체 실사 시 항공료는 전체 방문업체 수로 나누어 해당분만 지급
	제품분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분석비 및 시료 운송비 (운송비 16만원 한도) -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분석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운송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인증·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품분석비만 정산 (필요 시 증명자료 제출)
대행비	통·번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번역 및 현장심사를 위한 통역비 - 통역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통역 현장사진 - 번역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번역 결과물(원문 및 번역본)
	컨설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컨설팅 비용 (인증별 4,000천원 한도) - 컨설팅보고서, 컨설팅 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예비심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예비심사(심사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 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 비용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해당 인증제도 교육비용(인증별 최대2인) - 교육기관 이수증, 교육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집합교육은 교육비용/참석인원수 x 2인으로 산출 (참석자명단 제출)
	인증대행 수수료 * 해외에 소재한 인증·등록기관 관련 직접적 신청이 불가한 경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대행(인증신청 및 접수 등)을 위한 수수료 - 인증대행기관에서 발행한 대행내역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지출증빙사본: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계좌이체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

[별첨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신청기준	품목 및 인증이 다른 경우 aT, 한식연 중복 지원가능(한도적용)	• 중복 신청 불가
선정기준	수출실적 사후관리 부재	• aT, 한식연 지원받은 업체에서 갱신/사후심사 신청 시 지원연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불가 (2021년부터 적용)
지원한도	업체 당 20,000천원 한도 *여러 개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한도 적용	• 업체 당 20,000천원 지원, 단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취득하는 경우 40,000천원 지원한도 적용
신청/정산/취소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접수, 인증종류 변경·추가 가능 • 신청 취소, 수출 실적 확인을 위한 관리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www.foodcerti.or.kr) 접수 • 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추가 불가 • 10.31 이후 취소업체는 차년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 동의 필수
진행현황 확인	이메일, 유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www.foodcerti.or.kr)을 통해 관리: 단체 메일 발송→(업체)진행 단계보고(필수)→진행현황 확인
정산기준	[인증비] 숙박비, 국내교통비 정산	• 숙박비, 국내교통비 정산항목에서 제외
	[제품분석비] 인증요구사항에 따른 제품분석비 정산	• 인증등록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품분석비만 정산(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예) 미국 FDA등록의 경우 영양성분 분석비 지원불가
	[대행비] 인정소요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비 인증별 4,000천원 한도 • 대행비는 인정소요비용의 50% 한도내에서 정산
	[예비심사비] 기준 부재 *예비심사: 심사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	• 예비심사비를 대행비에 신설. 단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
	현지화금액 환율 정산신청일 기준 최초 매매기준을 적용	• 송금 시 환율적용(실비정산)
	지원기간 내 인증취득이 어려운 경우 현장심사 완료 전까지 인정 (2개월 내 인증서 사본 제출)	• 지원기간(2020.11.30.)내 인증취득 완료전만 정산 가능